

지분 압축기 유압실린더에 협착

사업장 내에서 지분(종이 분진) 압축작업 공정에서 왕복운동하고 있는 유압실린더 압축판 지지용 Bracket (브래킷)과 고정되어 있는 기계 본체 사이에 떨어진 이물질 제거하던 중 협착되어 사망



발생 원인

-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장소에 접근
 - 수리, 점검, 청소, 이물질 제거 등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켜야 하나 자동으로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함
- 협착 위험장소 방호울 미설치
 - 협착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호덮개(방호울, 방책) 미설치

TI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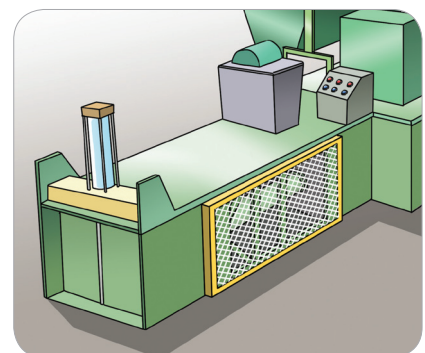
안전작업

1 위험장소 출입 시 운전정지 등(기계전원 차단)

- 지분 압축기 하부 협착위험 장소에 수리, 점검, 청소, 이물질 제거를 위해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“기동스위치 조작금지” 등의 표지를 부착

2 협착위험장소에는 방호울이나 방책을 설치

- 지분압축기 측면 유압실린더 왕복운동 부분에는 방호울이나 방책 설치



방호울 설치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(원동기 ·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




지분 압축기 유압실린더에 협착

설비 내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세요!

